

2026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국외근무자의 자녀,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2025. 7. 7.(월) 09:00 ~ 7. 11.(금) 17:00
〈서류제출은 2025. 7. 16(수) 17:00까지〉

면접고사

2025. 8. 21.(목) 10:00

합격자 발표

2025. 11. 7.(금) 17:00 이후

문서 등록 기간

※ 기한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

2025. 12. 15.(월) 09:00
~ 12. 17.(수) 16:00

등록금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합격 취소

2026. 2. 3.(화) 09:00
~ 2. 5.(목) 16:00

사증(VISA)발급신청

개별(외국인만 해당)

본인 입국준비

개별(외국인만 해당)

학번부여 및 수강신청

별도 공지

입학 및 개강

2026. 3. 3.(월)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한남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는 본교 수시모집의 다른 전형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본 전형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최대선발 가능인원
문과대학	문과대학자유전공학부	35	3
	국어국문·창작학과	56	5
	영어영문학과	54	5
	응용영어콘텐츠학과	25	2
	일어일문학과	25	2
	프랑스어문학과	22	2
	문헌정보학과	37	3
	사학과	25	2
	기독교학과	18	1
공과대학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	53	5
	정보통신공학과	46	4
	전기전자공학과	46	4
	멀티미디어공학과	39	3
	건축학과(5년제)	27	2
	건축공학과	27	2
	건설환경공학과	40	4
	기계공학과	55	5
	화학공학과	37	3
	신소재공학과	30	3
	스마트융합대학자유전공학부	32	3
스마트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52	5
	산업경영공학과	36	3
	SI융합학과	50	5
	수학과	34	3
	빅데이터응용학과	37	3
	경상대학자유전공학부	61	6
경상대학	경영학과	104	10
	회계학과	73	7
	무역물류학과	50	5
	경제학과	50	5
	중국경제통상학과	39	3
	호텔항공경영학과	48	4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최대선발 가능인원
	경영정보학과	36	3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49	4
	행정학과	53	5
	경찰학과	36	3
	정치·언론학과	31	3
	사회복지학과	37	3
	아동복지학과	33	3
	상담심리학과	36	3
	사회적경제기업학과	29	2
	법학부(법학전공/법무법학전공)	58	5
생명·나노과학 대학	생명나노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24	2
	생명시스템과학과	61	6
	식품영양학과	42	4
	화학과	40	4
	스포츠과학과	46	4
	바이오제약공학과	33	3
아트&디자인 테크놀로지 대학	융합디자인학과	86	8
	회화과	33	3
	패션디자인학과	31	3
	미디어영상학과	42	4
린튼글로벌스쿨	린튼글로벌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미디어컬처전공)	51	5
탈메이지 교양·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235	23
총 선발가능 인원			5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원칙으로 선발하되 총 선발 가능인원인 52명을 초과하여 선발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사범대학(6개 학과)과 간호학과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Ⅱ. 입학 지원자격

공통사항

-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예정)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년도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음

유형별 지원자격

유형별 지원자격			최저 국외 재학·체류기간(년)				
			학 생		보 호 자		
					보호자 (국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국 외 근 무 자 의 자 녀	영주교포 자녀	영주교포(영주권 발급을 받은 자)의 자녀로서, 부모와 학생 모두가 국외에서 영주하고 국외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 중인 보호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고 귀국한 자	3	학생	3	학생	학생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국외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고 귀국한 자	3	국외재학기간	3	국외재학기간	국외재학기간
	유치과학자,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국외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고 귀국한 자	3	중 각 1 개 년	3	중 각 1 개 년	중 각 1 개 년
	해외선교사 자녀	선교 파송 훈련을 받고 국외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선교활동을 하고 있거나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고 귀국한 자	3	기간 마다	3	기간 마다	기간 마다
	자영업자, 현지법인 종사자 자녀	국외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사업/영업 중이거나 근무/사업/영업을 마치고 귀국한 자영업자 또는 현지법인 사업장 종사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고 귀국한 자	3	3/4 이상	3	2/3 이상	2/3 이상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1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교육감이 우리나라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
-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자
- 북한이탈주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보호자 및 보호자의 배우자'의 국외 재학·체류·근무 기간 예시

국내교육과정기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국외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학생, 보호자 및 보호자의 배우자 국외체류					· 학생 :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보호자의 국외 근무					3년(1,095일) 이상							

※ 보호자의 외국 근무(재직/사업/영업)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하며 국외 근무자의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

※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예비 산정하며, 졸업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국외근무자의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재학/근무/체류만 인정함

지원자격 인정 범위

가. 공통사항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기관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 (전·편입학 시 월반 미인정) 단, 본교 사유서 ([양식 6]참고) 및 증빙 자료 필수 제출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교육과정 중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을 통한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 학제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해당국의 학제가 상이한 경우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학기제는 우리나라 학제(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

구분	2학기제	
	1학기	2학기
3학기제	1, 2학기 정상 이수 시 인정	2, 3학기 정상 이수 시 인정
4학기제		3, 4학기 정상 이수 시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국내학교와 외국학교 간 재학 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 학기 중 1개 학기만 국외학교 재학 학기로 인정)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예시>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 학 기 간	D	D	D				D	D	D				D	D	D	D								
			A	A	A	누락			A	A	A	누락					누락	A	A	A	A	A	A	A

중복학기 G2-1로
G3-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5-1로
G6-2 대체 가능

G9-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단순누락(질병, 휴학, 자퇴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 전·편입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은 인정하지 않음

나. 국외 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의 범위

국외근무자의 범위	영주교포	· 지원자 및 지원자의 부모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며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자
	해외선교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정하는 종교단체나 본교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종교단체가 파견한 선교사
	자영업자 및 현지법인 종사자	· 적법한 사유(절차)로 해외에서 자영업 또는 현지법인에 종사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개인사유의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자격 인정 불가

◦ 지원 자격 인정 기간

구분	내용
학생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연속으로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 재직·재학·체류 기간 부족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검토 후 지원자격 미충족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국외재학기간 산정 기준

유형	내용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기 개시 이후 중간 편입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지원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학사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재학 사실 및 학기 개시일을 증명해야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유형	내용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 위 국외재학기간 산정 기준 표에 따라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학기 개시 이후 중간 편입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 사실 기록을 근거로 체류일수 산정 (출국일은 체류일에 산입하며 입국일은 제외)

다.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라. 기타사항

- 지원자별 해당국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이 부여됨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의거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해당 없음
- 졸업예정자는 2025.02.28.(금)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외국 학제와 우리나라 학제를 고려하여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Ⅲ. 전형방법

지원자격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방법

자격유형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 형 방 법
국외근무자의 자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면접전형 100%	■ 1:1면접을 통해 수학능력을 적합(P) 또는 부적합(F)으로 판정하며,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린튼글로벌스쿨은 영어면접을 실시함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서류전형 100%	■ 공인어학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린튼글로벌스쿨 지원자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영어 능력을 평가함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동점자 처리 원칙 (북한이탈주민은 해당사항 없음)

- 1순위 : 최종 학력을 취득한 학교의 전체 성적 - 2순위 : 최종 학력을 취득한 학교의 마지막 학기 성적

※ 모든 지원자는 모집요강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에 관한 심사는 기본 서류심사와 함께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계별 심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으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지원자에 한해 개별 연락을 합니다.

※ 본교에서 요구한 미비서류를 개별 통보한 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자의 수학능력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모집 시기	전형	모집단위	반영방법	세부사항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해당 모집단위	정량평가	■ 반영방법 : 조치사항별 전형총점의 N% 감점						
				조치 사항	조치내용	반영방법	전형총점별 감점			
							1,000점	500점	300점	
				1호	서면 사과 피해학생	전형총점의 5% 감점	50점	25점	15점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전형총점의 10% 감점	100점	50점	30점	
				5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 치료					
				6호	출석 정지	전형총점의 15% 감점	150점	75점	45점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전형총점의 20% 감점	200점	100점	60점	
				9호	퇴학					

※ 학교폭력 조치사항 적용 최종 시점은 해당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 해외고교 출신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해당 없음 (단, 한 학기라도 국내 고교 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반영)

【 IV. 전형일정 】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2025. 7. 7.(월) 09:00 ~ 7. 11.(금) 17:00 〈서류제출은 2025. 7. 16(수) 17:00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만 실시(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 · 서류제출 : 입학관리실 방문제출(우편접수 가능)
면접고사	2025. 8. 21.(목) 10:00 <대한민국 시간>	· 면접을 진행하는 ‘국외근무자의 자녀’ 지원자에 한하여 응시 (수험생 자택 등에서 온라인으로 응시)
합격자 발표	2025. 11. 7.(금) 17:00 이후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에 공지
문서 등록 기간	2025. 12. 15.(월) 09:00 ~ 12. 17.(수) 16:00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에 공지 · 문서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
등록금 납부	2026. 2. 3.(화) 09:00 ~ 2. 5.(목) 16:00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에 공지 ·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합격 취소

V-1. 제출서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및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번호	서류명	자격유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외근무자의 자녀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영주교포	공무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상사직원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선교사	자영업자	현지법인종사자	
1	입학지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		○	○	○	○	○	○	○	○
2	학력조회 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	○	○	○	○	○	○	○
3	수학기록표 (본교 소정양식)		○	○	○	○	○	○	○	○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최종학력 취득 국가가 중국인 경우, 학력인증서 제출 시 사본 제출 가능)	① 해당 증명서가 영어 또는 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된 공증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아래 중 하나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	○	○	○	○	○	○
5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 해당국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 해당국 정부기관이 확인한 아포스티유 확인서(Apostille)	○	○	○	○	○	○	○	○
6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원본 또는 재학 사실 입증 가능 서류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한국에 소재한 해당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 학력인증서(영문)원본(최종학력 취득 국가가 중국인 경우) (단, 한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위의 확인서 제출 불필요) ③ 재학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	○	○	○	○	○
7	외국학교 School Calendar 또는 학사일정을 알 수 있는 공식 서류(학기/방학 개시일 및 종료일 명시)		○	○	○	○	○	○	○	○
8	부·모 등 보호자의 국외근무 및 거주기간 기록표(본교 소정양식)		○	○	○	○	○	○	○	
9	보호자의 재직(경력) 증명서 원본(국외 재직(근무 경력) 기간 명시)		○	○	○	○			○	
10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	○	○	○	○	○	○	
11	출입국 사실증명서 원본(부모, 지원자)		○	○	○	○	○	○	○	○ (지원자)
12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부모, 지원자) (본교 소정양식)		○	○	○	○	○	○	○	○ (지원자)
1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 지원자)		○	○	○	○	○	○	○	○ (지원자)
14	해외지사 설치인증서(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승인)서 원본				○					
15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	○	
16	선교단체장 발행의 선교파송증명서 원본						○			
17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원본							○		
18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원본								○	
19	영주권 사본(부모, 지원자)		○							
20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부모, 지원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	○	○	○	○	○	○ (지원자)
21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참고 및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	△	△	△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아래 학과(전공) 구분에 따라 해당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			○							
모집단위 구분		제출 공인어학성적표								
리튼글로벌스쿨 지원자 중 비영어권 국가출신자	· TOEIC 850 · TOEFL iBT 80 · IELTS 5.5 · NEW TEPS 385 중 택 1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 (Face-to-face or Internet screening interview)를 통해 대체 가능								
22	리튼글로벌스쿨 이외의 학과(전공)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인증서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인터넷 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3급 이상 인증서 · 본교 한국어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수준) 합격증 · 본교 한국어교육원 3급 과정 이상 수료증 중 택 1 단, 국내 중·고등학교 과정(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제외)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OPIK IBT) 인증서 대신 해당 중·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
23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원본(해당 증명서가 영어 또는 한글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된 공증문서를 제출하여 함)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서(또는 혼인사실확인서) · 혼인신고서(또는 혼인사실확인서) · 혼인신고서(또는 혼인사실확인서) · 혼인신고서(또는 혼인사실확인서)									○ (외국인)

* ○: 제출 △: 해당자 제출

V-2.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번호	서류명	
1	입학 지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3	학력 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원본 (국내 초·중·고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린튼글로벌스쿨 지원자에 한해 아래의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제출		
5	제출 공인어학성적표	
	<table border="1"> <tr> <td> · TOEIC 850 · TOEFL IBT 80 · IELTS 5.5 · NEW TEPS 385 중 택 1 </td><td>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Face-to-face or Internet screening interview)를 통해 대체 가능함</td></tr> </table>	· TOEIC 850 · TOEFL IBT 80 · IELTS 5.5 · NEW TEPS 385 중 택 1
· TOEIC 850 · TOEFL IBT 80 · IELTS 5.5 · NEW TEPS 385 중 택 1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Face-to-face or Internet screening interview)를 통해 대체 가능함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졸업, 월반, 코로나-19 관련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본교 사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학력을 취득한 국가가 중국인 경우, ‘학력인증서’는 <http://www.cdgdgdc.edu.cn>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외국 학교에 입학한 자는 국내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 : (34430)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 한남대학교 입학관리실
- 기타문의 : 한남대학교 입학관리실(☎ 042-629-8282 Fax 042-629-7838, <http://ibsi.hnu.kr>)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 현황 : 2024. 01. 11 기준(출처 : 외교부, <http://www.0404.go.kr>)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중동·아프리카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재외 한국학교 현황 : 2022. 4. 1 기준 (출처 : 교육부 국외(유학)교육, <http://www.moe.go.kr>)

국가/지역	학교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 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VI.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과 등록에 관한 사항

-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해야 하며, 여러 대학에 동시에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본교 수시모집의 다른 전형에 지원할 경우, 복수지원에 해당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교에 합격한 자는 지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대리인(부·모, 친지 또는 지인)이 제출 시에는 지원자의 학력사항 및 국외거주·체류·재학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외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당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기관이나 본교 입학원서 접수처에서 원본과 대조해야 하며, 추후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련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 사실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지원서에 반드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관리실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연락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된 입학원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국외 고교(또는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5년 3월까지 졸업증명서(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를 본교 입학관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형에 관한 사항

- 지원자의 합격여부는 본교 입학홈페이지(<http://ibsi.hnu.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절차 및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 미비로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고사 대상자는 고사 당일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학력조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에 합격한 후 관련기관의 사증발급이 거부되거나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본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격 취소)합니다.
- 전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입학홍보처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전형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85,000원(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등록에 관한 사항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게시된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에서 2025. 11. 7.(금) 17:00 이후 확인 가능
- 합격자 문서 등록 기간 : 2025. 12. 15.(월) 09:00 ~ 12. 17.(수) 16:00까지 등록 (미등록 시 합격 취소)
- 최종 등록금 납부 기간 : 2026. 2. 3.(화) 09:00 ~ 2. 5.(목) 16:00까지 납부 (미납 시 합격 취소)

등록금 및 장학 혜택

(단위 : 원)

계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5학년 학기당	비 고
인문, 사회	3,545,580	3,393,920	3,393,920	재외국민 장학금 지급 (등록금의 50%를 1년간 지급) 단, 2학기는 1학기 성적 3.5이상자 ※ 해외선교사자녀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수학과	4,114,800	3,963,150	3,393,920	
이학, 체육	4,133,210	3,981,560	3,981,560	
공학, 예능	4,530,060	4,378,410	4,378,410	
글로벌	4,044,180	3,892,520	3,892,520	

※ 상기 등록금과 장학 기준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장학 관련 세부 기준 및 내용은 우리대학 장학팀(042-629-8355)으로 문의

해외선교사자녀 장학금

구분	장학 특전	
대상	선교 파송 훈련을 받고 외국에서 3년 이상 선교활동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교사의 자녀 중, 재외국민 자격으로 합격한 자 단, 선교 파송기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단체이어야 함	
입학 첫 학기	등록금 50% 감면	
재학 중	평점평균 2.50 이상 3.50 미만	등록금 30% 감면
	평점평균 3.50 이상 4.00 미만	등록금 50% 감면
	평점평균 4.00 이상	등록금 100% 감면

※ 상기 장학 혜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Application Form (지원서)

수험번호	
지원유형	

LEGAL NAME (성명) (As it appears on your passport)	KOREAN(한글)	ENGLISH(영문)		사 진 PHOTO (3cm × 4cm)
NATIONALITY (국적)		GENDER (성별)	☐ MALE (남) ☐ FEMALE (여)	
COUNTRY OF BIRTH (출생국)		DATE OF BIRTH (생년월일)	YEAR년/MONTH월/DAY일	
PASSPORT NO. (여권번호)		RRN / Alien Registration ID NO. (주민/외국인등록번호)		

ADMISSION UNIT(학과(부))	COLLEGE (대학)	DEPARTMENT(DIVISION) 학과(학부)	CODE		
HOUSING PLAN	☐ Dormitory		☐ Other ()		

HOME ADDRESS (지원자 주소)	(POSTAL CODE 우편번호)	TELEPHONE (전화번호)	
		MOBILE (휴대폰)	
		EMAIL	
EMERGENCY CONTACT (비상연락처)		TELEPHONE (전화번호)	
		MOBILE (휴대폰)	

EDUCATIONAL BACKGROUND(교육 경력)			
NAME OF SCHOOL(학교 이름)	DATES ATTENDED (재학기간)		
	From(YY/MM/DD) ~부터(년/월/일)	To(YY/MM/DD) ~까지(년/월/일)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MIDDLE SCHOOL (중학교)			
HIGH SCHOOL (고등학교)	(POSTAL CODE)		
	TELEPHONE (전화번호)	FAX(팩스)	EMAIL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I fully understand that any falsifying or concealing of material facts or using of false documents in the submission of this form may result in the cancellation of my admission and degree by Hannam University.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틀림이 없으며 만약 허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합격한 이후라도 발견될 경우 그로 인한 입학 취소 또는 학위 취소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Date: _____
Name(Print): _____
Signature: _____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To whom it may concern: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①).

I have applied to Hannam University in Daejeon, Korea and agree to permit the release of my academic records to this university when officially requested.

In connection with this,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cooperation with Hannam University in giving information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 Name Enrolled at the School: _____ ②
- Date of Birth: (YY/MM/DD) _____
- Date of Admission(Transfer):(YY/MM/DD) _____ ③
- Date of Graduation(Withdrawal): (YY/MM/DD) _____ ④

Sincerely Yours,

Date: _____

Name: _____

Signature: _____

① Write down the school name of your highest level of certificate.

② Write down your full name in English that you used at ①

③ Write down the exact date of admission(transfer) of ①

④ Write down the exact date of your graduation(withdrawal) of ①

[양식3] ※ 아래 내용 중 **별도 표시**된 부분만 작성하여 한남대학교 입학관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포함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포함 Yes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표기 Yes []미표기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	--

용도 (Purpose)	
--------------	--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OO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 · Gun · Gu or Eup · Myeon ·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 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수 학 기 록 표

지원자격 구분 (Type of Application)		수험번호 (Application No.)		성명 (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국적 (Nationality)	
----------------------------------	--	---------------------------	--	--------------	------------	-------------	---------------------	--

■ **출신학교별 대학 · 고 · 중 · 초 수학 정보 기록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and Elementary School) *Please write in English**

학교명 (공식 명칭 기재)	소재국가	학교주소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재학기간		재학년수 ■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하게 이수하지 않은 경우 ▲표시																											
				~부터 (YY/MM)	~까지 (YY/MM)		년 개월 (YY/MM)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총 재학년수						년 개월																											

- ◇ 재학기간은 재학증명서(또는 재학사실 입증가능서류) 상의 기간을 기재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 유치원과정 수학기간은 제외함.
-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 ◇ 상기 초·중·고등학교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함.

■ 특이사항

학교명	학년 / 학기	특이사항

위 기재내용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허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인은 그에 근거한 입학 또는 학위취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_____

지원자 서명: _____

부·모 등 보호자의 국외근무 및 거주기간 기록표

지원자격 구분 (Type of Application)		수험번호 (Application No.)		성명 (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국적 (Nationality)	
----------------------------------	--	---------------------------	--	--------------	------------	-------------	---------------------	--

■ ‘국외근무자의 자녀’ 자격 유형으로 지원한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 상기 표는 지원자의 재학증명서, 국외 근무자의 재직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무기간 : 근무를 위해 해당 국가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직증명서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기재된 기간

◇ 거주기간 : 해당 국가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기재된 기간

■ 특이사항

기간	특이사항

위 기재내용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허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인은 그에 근거한 입학 또는 학위취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_____

지원자 서명: _____

사유서

지원자 정보	지원유형		수험번호		휴대전화	
	지원학과		성명		추가연락처	
해당하는 사유에 'O' 표시	학기 결손	학기 중복	조기졸업	월반	기타	
해당 학교 명						
해당 학기						
상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해당 서류에 번호 표시

1		5	
2		6	
3		7	
4		8	

위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허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유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한남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보 호 자 : (인)
지 원 자 : (인)

[참고자료]
 <GPA Conversion Table>

4.0 scale	4.3 scale	4.5 scale	7.0 scale	100 points scale
3.93~4.00	4.23~4.30	4.42~4.50	6.91~7.00	100
3.86~3.92	4.15~4.22	4.34~4.41	6.81~6.90	99
3.78~3.85	4.06~4.14	4.25~4.33	6.71~6.80	98
3.71~3.77	3.98~4.05	4.16~4.24	6.61~6.70	97
3.63~3.70	3.90~3.97	4.08~4.15	6.51~6.60	96
3.56~3.62	3.82~3.89	3.99~4.07	6.41~6.50	95
3.48~3.55	3.74~3.81	3.90~3.98	6.31~6.40	94
3.41~3.47	3.65~3.73	3.82~3.89	6.21~6.30	93
3.33~3.40	3.57~3.64	3.73~3.81	6.11~6.20	92
3.26~3.32	3.49~3.56	3.64~3.72	6.01~6.10	91
3.18~3.25	3.41~3.48	3.56~3.63	5.91~6.00	90
3.11~3.17	3.33~3.40	3.47~3.55	5.81~5.90	89
3.03~3.10	3.25~3.32	3.39~3.46	5.71~5.80	88
2.96~3.02	3.16~3.24	3.30~3.38	5.61~5.70	87
2.88~2.95	3.08~3.15	3.21~3.29	5.51~5.60	86
2.81~2.87	3.00~3.07	3.13~3.20	5.41~5.50	85
2.73~2.80	2.92~2.99	3.04~3.12	5.31~5.40	84
2.66~2.72	2.84~2.91	2.95~3.03	5.20~5.30	83
2.58~2.65	2.75~2.83	2.87~2.94	5.10~5.19	82
2.51~2.57	2.67~2.74	2.78~2.86	5.00~5.09	81
2.43~2.50	2.59~2.66	2.69~2.77	4.90~4.99	80
2.36~2.42	2.51~2.58	2.61~2.68	4.80~4.89	79
2.28~2.35	2.43~2.50	2.52~2.60	4.70~4.79	78
2.21~2.27	2.34~2.42	2.43~2.51	4.60~4.69	77
2.13~2.20	2.26~2.33	2.35~2.42	4.50~4.59	76
2.06~2.12	2.18~2.25	2.26~2.34	4.40~4.49	75
1.98~2.05	2.10~2.17	2.17~2.25	4.30~4.39	74
1.91~1.97	2.02~2.09	2.09~2.16	4.20~4.29	73
1.83~1.90	1.93~2.01	2.00~2.08	4.10~4.19	72
1.76~1.82	1.85~1.92	1.91~1.99	4.00~4.09	71
1.68~1.75	1.77~1.84	1.83~1.90	3.90~3.99	70
1.61~1.67	1.69~1.76	1.74~1.82	3.80~3.89	69
1.53~1.60	1.61~1.68	1.65~1.73	3.70~3.79	68
1.46~1.52	1.53~1.60	1.57~1.64	3.60~3.69	67
1.38~1.45	1.44~1.52	1.48~1.56	3.50~3.59	66
1.31~1.37	1.36~1.43	1.39~1.47	3.40~3.49	65
1.23~1.30	1.28~1.35	1.31~1.38	3.30~3.39	64
1.16~1.22	1.20~1.27	1.22~1.30	3.20~3.29	63
1.08~1.15	1.12~1.19	1.14~1.21	3.10~3.19	62
1.01~1.07	1.03~1.11	1.05~1.13	3.00~3.09	61
1.00이하	1.02이하	1.04이하	2.99이하	60